

# 중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고권석 (現한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 1. 서언

중국에는 한국에 없는 영업세 제도가 있다. 중국은 재화에는 증치세를, 용역에는 영업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세수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한 건의 거래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치세와 영업세를 중복해서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 오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재화와 용역에 모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16년 3월 23일 《关于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6]36号)로 4개의 문건, 즉 ①《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sup>1</sup>②《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事项的规定》③《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过渡政策的规定》 및 ④《跨境应税行为适用增值税零税率和免税政策的规定》을 하달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이란 이전에 영업세(营业税)를 징수했던 과세대상으로부터 영업세 대신 증치세(增值税)를 징수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이를 간단히 “营改增”이라 한다.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개시되었다. 따라서 이전에 영업세가 과세되었던 대부분의 용역에 대하여 증치세가 과세된다.

---

<sup>1</sup> 위의 4가지 문건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건은 ①《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이하 “办法”로 칭함)인데, 여기에는 새로운 세종의 세법을 제정한 것처럼 세법에 포함되어야 할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办法”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증치세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었고 증치세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항상 마주치고 있는 세법이므로, 먼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2 회에 걸쳐 소개하고 이후 몇 회에 걸쳐 증치세에 관한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2.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연혁

중국은 새로운 세법을 시행하거나 개혁을 할 때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도 시범적으로 특정지역 및 특정과세 대상에만 우선 실시하다가 지역 및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세 개의 단계를 거쳐 전국범위로 확대 실시되었다.

제1단계: **부분산업, 부분지역** 실시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교통운수업 및 부분 현대화 용역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실시하였다. 2012년 9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일에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지역을 상해시로부터 4단계로 나누어서 **북경시, 강소성, 안휘성, 복건성, 광둥성, 천진시, 절강성, 호북성 8개 성시**로 확대하였다.

제2단계: **부분산업, 전국범위** 실시

2013년 8월 1일부터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의 시범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방송, TV, 영화 용역**을 과세 범위에 산입하였다. 2014년 1월 1일

에 **철로 운수업 및 우정업**을 전국범위 내에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의 시범 대상에 산입하였다. **2014년 6월 1일부터 전신업**을 전국범위 내에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대상에 산입**하였다.

제3단계: **모든 산업, 전국범위** 실시

**2016년 5월 1일부터** 과세대상을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용역업**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 3. 영업세와 증치세의 비교

영업세와 증치세는 각각 어떠한 세금이며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지 전환 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과세대상

영업세는 특정한 업종(용역업 7개 업종) 및 두 가지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데 비하여 증치세는 매출 또는 수입하는 재화 및 수리수배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7개업종은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서비스업**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두 가지 행위는 **무형자산의 양도 및 부동산매출**이다. 제조업은 없고 주로 용역이 과세대상이다.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의 매출, 재화의 수입 및 수리수배용역**이다. 즉, 과세대상은 재화의 매출이나 수입이고 용역으로는 수리수배용역 하나만이 포함되어 있다.

## (2) 가외세와 가내세

증치세는 가외세(价外税)라 하여 원칙적으로 증치세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업세는 가내세(价内税)라 하여 가격에 영업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업세는 세금자체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증치세는 가외세이므로 가격 외에 증치세를 별도로 분리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중국기업이 영업세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요하므로 항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 (3) 세율

영업세는 업종에 따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비해 증치세는 매출하는 재화 및 과세용역에 따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영업세의 세율은 교통운수업 3%, 건축업 3%, 금융보험업 5%, 우편통신업 3%, 문화체육업 3%, 오락업 5~20%(대부분 20%의 세율 적용), 서비스업 5%, 무형 자산의 양도 5%, 부동산매출 5%이다.

증치세의 세율은 기본세율 17%, 저세율 13%이고 기타 영세율 및 징수율제도가 있다.

## 4. 영업세의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가

중국기업과 거래를 하다 보면, 용역가격 외에 영업세를 별도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영업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기업은 당황하게 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나 중국의 증치세는 재화의 가격 외에 부가가치세나 증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 그렇다면 영업세 부담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업세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이다.

부가가치세는 가외세(价外税)이므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영업세는 가내세(价内税)이므로 가격에 이미 영업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면 영업세를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는 인건비가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인건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주지하듯이 물건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 및 비용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정한다. 이 비용에 이미 영업세를 산입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2중으로 영업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한편, 영업세는 용역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며 용역공급자에게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부담을 시키면 받은 금액만큼 수입으로 계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다시 부담을 요청하게 되어 결국 순환논리에 빠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업세를 상대방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